

의안번호	2210106
의 퇴 인	이병진 의원
회 답 일	2025. 5. 27.
추 계 번호	25A2607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5조 (사용시설의 점검)	사업자는 사용시설(세대 내에 있으면서 사용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시설을 포함)이 기술기준에 맞는지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여야 함(제1항)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사용시설의 고장 등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요금 이 사용자의 실제 사용량을 초과하여 책정된 경우 사업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납부를 면제하여야 함(제5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5조 (사용시설의 점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집단에너지사업자로서 점검해야 하는 대상에 세대 내 사용시설이 포함되고 점검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아 사용자 요금을 면제하게 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민간사업자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사용시설에 대한 점검 확대 및 요금 납부의 면제가 발생하더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는 않음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으로 법 제9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총 73개이며, 사업장 수는 총 105개소임
 -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자로 부산광역시(지역

냉난방사업자)와 울산광역시(산업단지사업자)가 있음

[표 1] 집단에너지사업자 현황

(2023년말 기준, 개)

구 분	사업자 수	사업장 수
지역냉난방사업자	28개	58개
산업단지사업자	39개	41개
병행사업자	6개	6개
합 계	73개 사업자	105개 사업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다만, 개정안으로 인해 사업자가 점검하여야 하는 확대 시설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개정안에 따라 확대되는 점검 대상은 세대 내 있으면서 사용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용시설임
 - 개정안의 사업자가 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발생한 고장으로 사용자의 요금이 실제 사용량보다 초과하여 책정된 초과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추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서영빈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서영빈	02-6788-4653	ybin@assembly.go.kr